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2. 1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2007년 5월 11일자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제1조 중 “제54조”를 “제62조”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62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4조”를 “제6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제62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